

관리번호	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과제구분	완료여부
7	기관	새로운 사옥 마련 지원	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(취·등록세, 재산세)	법령 개정	완료

세부 지원내용		관련근거	일자	추진상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- 새로운 사옥 매입시 취득세·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(5년간 100%, 그후 3년간 50%) 		지방세법 제274조의2 혁신도시특별법 제48조1항	06.10.31	○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을 시군구세감면조례표준안에 반영하여 시도 시달	
소관부처	행정자치부		06.12.30	○ 지방세법 제274조의 2 신설 -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	
담당부서	지방세정책과		06.3.14 ~07.1.11	○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 - 혁신도시특별법 공포(07.1.11) *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·군·구세감면조례에 반영	
			11.12.31	○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- 취득세 면제,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(2012.12.31) - 재산세(5년간 100%, 3년간 50%)	○ 감면기한 연장 (15.12.31) 추진 예정

		13.1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(2015.12.31일 한) ○ 이주직원 취득세 면제, 법인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○ 이주기관 재산세 감면(5년간 100%, 3년간 50%) 	
		16.12.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(2016.12.31일 일몰도래) ○ 이주직원 취득세 면제, 법인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'16년 → '17.12.31) ○ 이주기관 재산세 감면(5년간 100%, 3년간 5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7.12.31까지 적용 - '18년부터는 5년간 50% 감면 	